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2026년 2월 5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, 포항시장

2)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3) 상정일자

❍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2. 5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신정희 재정관리과장)

1) 제안이유

❍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가.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함(안 제7조)

-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변경

나.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함(안 제8조)

-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변경

다.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함(연 제9조)

-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변경

라.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

감면 규정 신설(안 제9조의3)

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함

마.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함(연 제10조)

-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변경

바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5조)

- 제목 “(중복감면의 배제)”를 “(중복특례의 배제)”로 변경
- 본문 “과세대상”을 “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”으로, “감면규정”을 “지방세 특례 규정”으로 각각 변경

3) 관련법령

❍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❍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,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**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**되며,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